

종사자 윤리지침

어르신이 자율권과 생존권을 가진 존재임을 항상 지각하고 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노력하며,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, 사회적·경제적·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
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, 실천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다음과 같이 윤리지침을 정하여 준수한다.

I. 종사자의 기본적 윤리기준

- 종사자는 케어자로서의 자신이 맡고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.
- 종사자는 초심을 귀하게 여기고 매사에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.
 - 매사에 약속을 지키며 책임 있는 언행과 신뢰받는 행동을 하여야 한다.
 - 자신의 올바른 활동은 모든 종사자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한다.
- 종사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보고한다.
- 종사자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.
 -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한다.
 -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기계발의 기회로 삼는다.
 - 자신의 업무활동을 점검하고 일의 경과를 기록하여 자가 평가, 지도받은 내용, 앞으로의 발전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.
- 종사자는 업무에 관련하여 수급자의 가족, 의사,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 - 센터장이나 간호사와의 협조는 필수적이며 지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한다.
 - 종사자는 동료, 대상자의 가족과 협조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.
- 종사자는 법적·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.
 -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, 무능력, 반복되는 태만
 - 감독자에 대한 불복종이나 반항
 - 지시되지 않은, 비도덕적인, 정직하지 못한 행위
 - 알코올이나 약물,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
 -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를 비우는 행위
 - 수급자의 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,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
 -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
 -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유도하는 행위

II. 수급자에 대한 윤리

- 종사자는 신체적,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.
 - 서비스 제공시 각 수급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지켜주며, 증진시켜 주어야 한다.
 - 수급자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하고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.
 - 서비스를 제공 전 반드시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 후 실행한다.
- 종사자는 인종, 연령, 성별, 성격, 종교, 경제적 지위, 정치적 신념, 신체 정신적 장애,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.
 - 종사자와 같은 종교를 가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.

- 나.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과 소외된 계층에 말투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.
- 다. 신체적, 정신적 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.
- 3. 종사자는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실천하여야 한다.
 - 가. 수급자와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변경 시 사전 연락을 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.
 - 나. 수급자 앞에서는 피로해 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.
 - 다. 수급자에게 유아어, 명령어,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.
 - 라. 수급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도록 한다.
 - 마.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되지 않도록 한다.
 - 바. 수급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된다.
- 4.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.
 - 가. 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, 업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 - 나. 종사자는 수급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중대한 상황 외에는 발설하지 않도록 한다.
- 5.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.
 - 가.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대한 언어적, 신체적 폭력행위
 - 나.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
 - 다. 수급자 혹은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팁을 받는 행위
 - 라. 수급자 혹은 가족들에게 물건을 팔거나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
 - 마.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

Ⅲ. 전문직으로서의 윤리

- 1. 우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,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.
- 2. 우리는 어르신의 종교, 인종, 성, 연령, 국적, 결혼상태, 성 취향, 경제적 지위, 정치적 신념, 정신·신체적 장애, 기타 개인적 선호, 특징, 조건,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- 3. 우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,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.
- 4. 우리는 정의 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,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.
- 5. 우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,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.
- 6.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직으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.
 - 가. 사회복지사 윤리강령
 - 1)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·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,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한다.
 - 2) 특히, 사회적·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·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선다.
 - 3)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,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.
 - 4)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고,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 - 5)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,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

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.

나. 요양보호사 윤리강령

- 1) 요양보호사는 인종, 연령, 성별, 성격, 종교, 경제적 지위, 정치적 신념, 신체·정신적 장애,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.
- 2)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.
- 3)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.
- 4)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.
- 5)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, 복장 및 청결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.
- 6) 요양보호사는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바르게 행동한다.
- 7)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.
- 8)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, 의사, 간호사, 사회복지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